#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호 2262

제출연월일 : 2024. 7. 25.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개정(안 제1조)

소방시설업 및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안 제2조)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안 제3조)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하여 거짓광고를 한 자,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 제4 조)

사업시행자가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소방시설공사업법」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 본문 중 "제38조"를 "제37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4호 중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5.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2조(「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20162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79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 7.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

한 자

제3조(「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벌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인증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2. 제7조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거짓으로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자
-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

- ③ 우수기업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4조(「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벌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
  -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보고 를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 1.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군수
  - 2. 제1항제2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방시설공사업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8조 및 제39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7 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u>&lt;삭 제&gt;</u>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	
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u>으로 한 자</u>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	
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제39조(양벌규정)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35조부터 <u>제38조</u> 까지의	제37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	
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	

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의와	감독을	게을리さ	하지 아
니	한 경	우에는	그러하기	이 아니
하┖	<b>구</b> .			

-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 1. ~ 13의3. (생략)
  - 14. <u>제31조제1항</u>에 따른 명령 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을 한 자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 다.

,
제40조(과태료) ①
1. ~ 13의3. (현행과 같음)
14. <u>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u>
15.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
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u>소방청장,</u>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벌칙) ①・② (생 략)	제77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승)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lt;삭 제&gt;</u>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	
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u>자</u>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	
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	
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	
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 자	
법률 제20162호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20162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79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
	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u>자</u>

<u>&lt;신 설&gt;</u>	7.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
	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
	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
	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제36조(벌칙) 제10조의2제2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 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 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

2. 제7조에 따른 재해경감 우 수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 로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자

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자

-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 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 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수 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 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
- 4.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 탁받은 인증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을 거짓이나

따라 위탁받은 인증시험의 실 시 및 인증서의 발급을 거짓이 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개 정

아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② 우수기업이 제1항제1호 또
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7조(과태료) <신 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
   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
   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자
- 2. 제7조제3항에 따른 우수기 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 하여 거짓 광고를 한 자
-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수로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자
-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① (생략)

<u>&lt;신 설&gt;</u>	③ 우수기업이 제1항제1호 또
	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	④ 제1항 및 제2항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38조(벌칙) 제29조제1항에 따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라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1항			
에 따라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방			
<u>해한 자</u>			
2.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			
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			
<u>짓 보고를 한 자</u>			
<u>&lt;신 설&gt;</u>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u>부과한다.</u>		
	1.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1항		
	에 따라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u>자</u>		

-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

   짓 보고를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 징수한다.
- 1.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군수
- 2. 제1항제2호의 경우: 행정안 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 <del>용</del>
1	안 제1조(「소방 시설공사업법」 의 개정) 제40조 제1항(과태료)	소방시설업 및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 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안 제2조(「자연 재해대책법」의 개정) 제79조제1 항(과태료)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 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종전 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안 제3조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제37조제1항 (과태료)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하여 거짓광고를 한 자,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수 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	안 제4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제38조(벌칙), 제 40조제1항 및 제2항(과태료)	○ 사업시행자가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종전에는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조(「소방 시설공사업법」 의 개정) 제40조 제1항(과태료)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조(「자연 재해대책법」의 개정) 제79조제1 항(과태료)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3조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제37조제1항 (과태료)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안 제4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제38조(벌칙), 제 40조제1항 및 제2항(과태료)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상세 사유

- (제1조) 소방시설업 및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벌금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건으로 현행법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 (제2조)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위탁받은 전문 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벌금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현행법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어, 향후 과태료 부과건수를 예측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 불가
- (제3조)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하여 거짓광고를 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에 대 하여 벌금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건으로 현행법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어, 향후 비용에 대해 기술적으로 추계 불가

#### O 제4조

- 종전에는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는 건으로 그동안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 사례가 없어 향후 벌금만 부과할 경우의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
- 사업시행자가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으로 부과 하던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현행법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어, 향후 과태료 부과건수를 예측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불가

#### Ⅲ. 부대의견

O 해당 없음

# Ⅳ. 작성자

# O 성명

# <제1조>

소방위	소방령	과장	국장
안경섭	이견근	김진욱	윤상기

#### <제2조>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국장
	한광순	이응범	박천수

#### <제3조>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국장
	방태희	지만석	박명균

# <제4조>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국장
한의민	현종일	박정호	박천수

#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안경섭 (제1조)	044-205-7507	fireaks@korea.kr
한광순 (제2조)	044-205-5118	skkukshan147@korea.kr
방태희 (제3조)	044-205-4518	bth1919@korea.kr
한의민 (제4조)	044-205-5153	na1282@korea.kr